

# 심사보고서

2023. 10. 16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생활체육과)
- 나. 상정의결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0. 16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- 가. 제안이유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·감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-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7조 및 제8조)
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6조 및 제10조)
-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, 제43조, 제4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 -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- 입법예고(2023.8.25. ~ 2023.9.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도·감독 등 강화와 강남구 생활체육 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의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와 부합하는 조문 정비에 그 목적이 있음.
- 안 제6조(보조금 지원)은 현행 조례가 “경비”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, 지방 “보조금”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여 예산의 관리 및 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조례 내용 중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5조제1항과 제8조,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음.<sup>1)</sup>

1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)** ①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·지원규모·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지원신청 체육단체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원금의 사용 등)** ①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,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  2. 지원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
  -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.
  - ④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1. 지원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.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

- 안 제7조(운영비 지원)은 보조금의 하나인 운영비를 지원 분야 및 종류,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.
  - 다만, 안 제7조 중 제4호의 “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”와 같은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표기는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반영한 기술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.
-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, 최소한 다음과 같은 표기를 검토할 수 있음
  - 안 제7조 중 제4호 “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”를 “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등<sup>2)</sup>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”로 검토해 볼 수 있음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⑤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.

2) 「행정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법령등**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법령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1) 법률 및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

2)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

3) 1) 또는 2)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이 정한 훈령·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

나. 자치법규: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259호

제안일자 : 2023.10.16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 관련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보완(안 제7조제4항)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“지원” 을 “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” 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경비의 지원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<u>경비를</u> 장애인체육단체, 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경비를</u>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보조금 지원) ①구청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<u>보조금을</u> 장애인체육단체, 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보조금을</u>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8조,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① <u>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</u></p>	<p>제6조(보조금 지원) ①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 <p>②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 <p>③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①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

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 
다음 각 호의 운영비  
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  
비

2. 사무실 운영 기본경  
비

3. 사무실 임차료

4. 그 밖에 지원이 필  
요한 운영경비

② 강남구장애인체육  
회는 제1항 각 호의 운  
영비에 변동이 수반되  
는 사항에 대해서는  
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 
하여야 한다.

③ 운영비의 구체적  
기준, 범위, 지급금액  
및 부당집행 방지를  
위한 관리감독에 필요  
한 사항은 구청장이  
따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  
청장은 「국민체육진

1. ~ 3. (개정안과 같  
음)

4. 그 밖에 장애인체육  
활성화 관련 법령 등  
에 따라 지원이 필요  
한 운영경비

②·③ (개정안과 같  
음)

제8조(지도·감독) <개정  
안과 같음>

홍법」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동호인조직 요건)

- ① 제6조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을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
- 1. ~ 3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8조(동호인조직 지원

중단 등)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을

제9조(동호인조직 요건)

- ① ----- 보조금 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동호인조직 지원

중단 등) -----

제9조 ① <개정안과 같음>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<개정안과 같음>

<p>명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「서울특별시 강남 구 생활체육진흥 조 례」 <u>제7조제2항</u>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4. <u>제7조제1항</u>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</p> <p>5. (생 략)</p> <p><u>제9조</u> ~ <u>제11조</u> (생 략)</p>	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 -- <u>제9조제4항</u>----</p> <p>4. <u>제9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</u> ~ <u>제13조</u>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와 같음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</u> ~ <u>제13조</u> &lt;개정 안과 같음&gt;</p>
--	---	--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경비의 지원 등”을 “보조금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비를”을 “보조금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비를”을 “보조금을”로,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3조”를 “제8조, 제9조 및 제11조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  2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
  3. 사무실 임차료
  4.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- ② 강남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,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

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종전의 제7조)제1항 중 “경비”를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8조)제3호 중 “제7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7조제1항”을 “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경비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<u>경비</u>를 장애인체육단체, 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경비</u>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보조금 지원) ① ----- ----- <u>보조금</u> <u>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보조금</u> ----- ----- ----- <u>제5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8조, 제9조 및 제11조</u>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제18조에 따라 <u>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상근직원 인력운영비</u></li> <li>2. <u>사무실 운영 기본경비</u></li> <li>3. <u>사무실 임차료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</u></li> </ol>

<신 설>

제7조(동호인조직 요건) ① 제6조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을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

1. ~ 3. (생략)

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② 강남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,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동호인조직 요건) ① ----- 보조금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제8조(동호인조직 지원중단 등)

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 1. 2. (생 략)
- 3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- 4.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
- 5. (생 략)

제9조 ~ 제11조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동호인조직 지원중단 등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-----  
----- 제9조제4항-----  
-----
- 4. 제9조제1항-----  
-----
- 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「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 2. 작성자

- 생활체육과 행정7급 안정(02-3423-6352)